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24 호(2026.04.03)

##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소득공제자용)

제정 2018. 4. 5

개정 2021. 1. 1

개정 2021. 3.25

개정 2023. 1. 1

개정 2026.04.03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저축(이하 "벤처펀드저축"이라 한다)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와 판매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저축방법 등)** 회사는 벤처펀드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거래계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저축을 취급한다.

**제 3 조(저축가입)** ① 벤처펀드저축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한한다.

② 벤처펀드저축은 **2028년 12월 31일**(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제 4 조(세제혜택)** ① 저축자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 한 벤처펀드저축 합계액(해당 저축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펀드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저축자 1명당 연 2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저축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 4 조 제 1 항의 소득공제한도 개정 내용은 2026 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해당 저축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 천만원 미만이고, 2026 년 1 월 1 일부터 2026 년 2 월 26 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의 개정 시행일 전날)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에 관하여는 개정약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약관에 따른다.

③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에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 73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저축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 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저축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조(감면세액추징)** 저축자가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 이하 "투자일"이라 한다)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저축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받지 아니한다.

1. 저축자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제 6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양도 제한등)** 저축자는 벤처펀드저축통장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통장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9 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투자협회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10 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저축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저축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개정규정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